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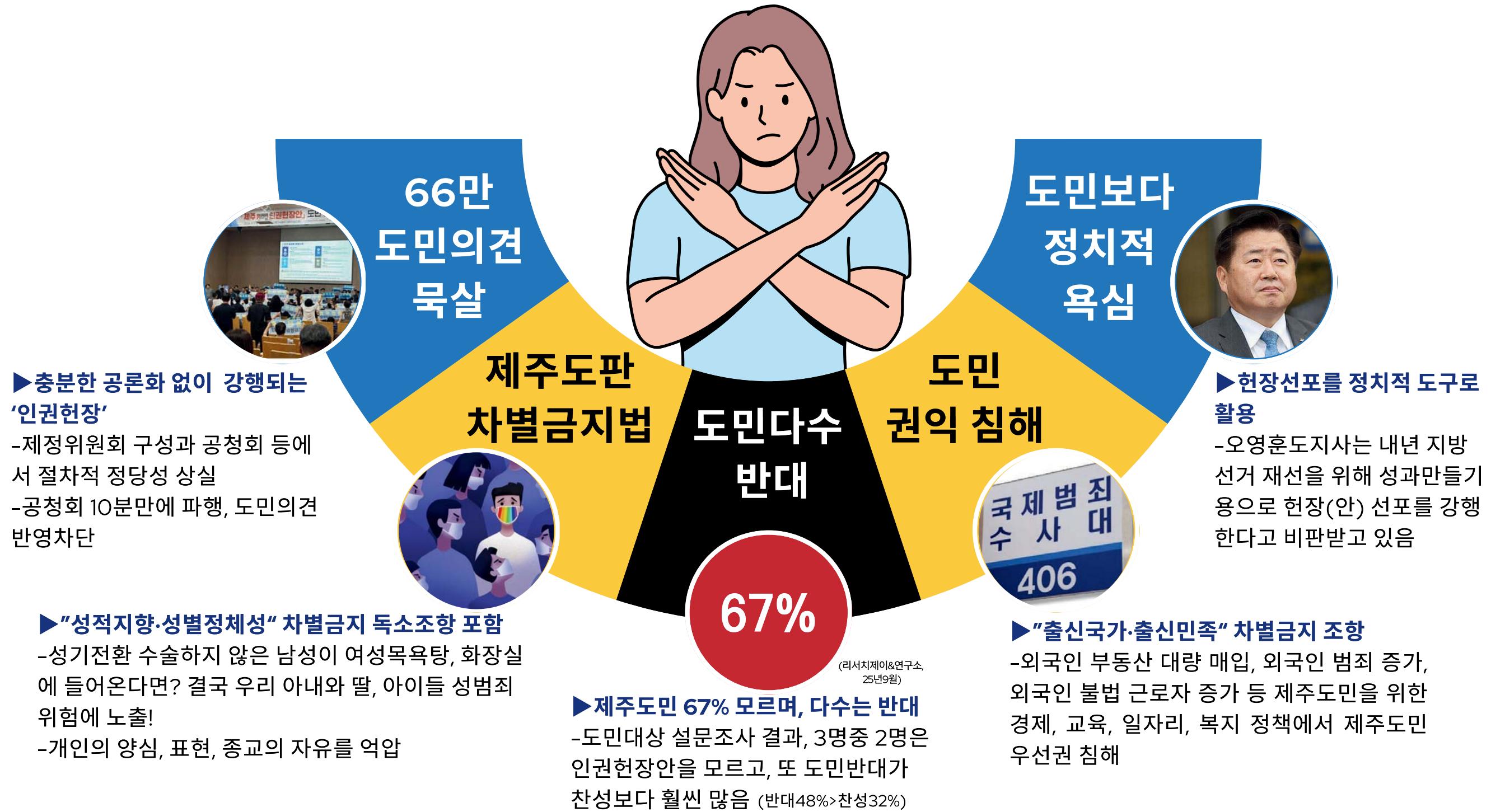


제주평화인권헌장, 도민 67%가 모른다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지금 멈추어야 하는 이유

제정위원회 구성과 공청회 등 절차적 정당성 상실, 민주주의 파괴!

일반 도민의 기본 권리인 양심/신앙/표현의 자유를 억압, 헌법파괴!



성적지향이란? 자신이 성적 끌림을 느끼는 이성·동성·복수 성별을 나타내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무성애 등이 있다.

제주평화인권현장 2조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지향을 포함하여 동성애·트랜스젠더를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혐오”로 매도 또는 처벌 위험에 처한다.

오영훈 도지사님! 도민들의 반대가 알보이십니까?

제주평화의귀향자 제7회 바다 화동(219 브터~현재)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촉구 국민대회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제주판 차별금지법!
오영훈 도지사는
즉각 폐기하라!



2025.12.02. (화) 오후 2시 제주도청 앞

제주거북한방파제 / 제주도교단협의회 / 제주성시화운동본부 / 제주도민단체연합
제주자치기운동본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바른인구국민대연합, 한국청소년비판서울제주연맹, 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 선한이웃봉사단,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시랑의재능기부, 바른성문화를 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해피어스성평역구조

후원 : 수협 801-02-043493 (거룩한방파제 황충구)